

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 제431호)

심사보고서

1997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8. 1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7. 8. 4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9. 6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정이유

-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, 군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 (안 제3조제2항)
- 나. 노인복지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%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함 (안 제4조제3항)
- 다. 기금의 용도는 노인문제상담소 운영,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라. 당해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(안 제7조)
- 마.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고성군의회에 제출하고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 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- 바.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(안 제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근거에 의거 상위법(경상남도조례)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까지 기금이 얼마 적립되었으며 금후 사용 및 계획은
- 답 : 1차 '96. 12. 31 현재 74,800천원이며, 2차 계획으로는 년 60,000천원씩 5년간 3억원을 목표로 하고 3억 적립시까지 사용못 함.
- 문 : 안 제3조2항2호 "군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" 중 "군지회"를 "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"라고 하여야 될 것 같은데 제안자 의견은
- 답 : 예, 누락된 것이 맞음.
안 제3조2항2호 중 "군지회"가 아니고 "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"라고 해야 맞습니다.

6. 토 론

- 제안자 답변 내용대로 안 제3조2항2호 중 "군지회"를 "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"라고 자구 정정

7. 심사결과

- 1997. 9. 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 제3조2항2호 중 "군지회"를 "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"로 정정하기로 하고 원안가결